Global Business Report 11-005
2011. 04. 08

#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워싱턴 KBC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Ⅰ 美 2011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개황

## □ 제 26차 2011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의의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로 약칭)는 1974 무역법(Trade Act of 1974), 1988 美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등에 의거, 美 무역대표부(USTR)가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미 업계의 교역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역, 기술장벽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사항을 국별로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

○ 2010년부터 NTE 보고서에서 위생검역장벽(SPS) 보고서와 기술장벽(TBT) 보고서가 분리되어 발표

- 기술장벽 보고서는 제품 표준, 테스트 요건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 기업들의 우려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장벽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표준화 관련 비관세 장벽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

- 위생검역장벽 보고서는 미 농축산업계가 농축산물 수출시 직면하게 되는 각국의 위생검역 장벽에 대한 내용으로 음식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식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절차 위주로 구성

○ 오바마 정부의 '5년 내 수출 두 배 달성' 목표 아래, Kirk 美 무역대표부는 2010년 미국 제품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해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 □ 조사 대상 및 범위

○ NTE 보고서는 EU 연합, 중국을 포함 전세계 62개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 작성

- 주요 조사 범위로는 1)수입정책, 2)정부조달, 3)수출보조금, 4)지적재산권 보호, 5)서비스 장벽, 6)투자장벽, 7)반경쟁 관행, 8)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무역장벽, 9)기타 장벽으로 구성

○ 기술장벽(TBT)은 다음의 9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조사

- 암호화 능력 갖춘 제품에 대한 규제, 바이오테크놀로지 라벨링 의무화, 적합성 평가기구 상호인정, 증류수 규제, 오가닉 제품 규제, 공식 공개의무, 할랄제품의 교역관련 문제, 불합리한 서류요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임의적 조치 증가 등 9개 분야가 조사 대상

- 17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EU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

○ 위생검역(SBS) 조사 범위는 5개 분야에 초점

- 조류독감, 바이오테크놀로지, 광우병, 최대잔류허용기준, 락토파민의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조사 진행

- 작년과 동일하게 48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SPS 장벽을 기술한 가운데, EU와 중국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

## Ⅱ 2011 對韓 무역장벽 내용 분석 및 평가

□ 2010 vs. 2011년 NTE 보고서 내 한국 관련 내용 비교

○ 2010년 12월 3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연비,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정에 합의하여 기념비적인 한미 FTA 최종안 도출

- 한국은 2009년 기준 4,500대 미만 판매량을 기록한 제조사는 2012년~2015년까지 4년에 걸쳐 한국 기준(평균연비 17km/ℓ 혹은 평균 배기가스 방출량 140g/km 기준)보다 19% 낮은 수준 허용하는 것에 동의

○ 정부조달 참여기회 확대, 스크린 및 방송쿼터 증가 방지, 금융시장 개방, 투자기회 확대 등 한미 FTA 발효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언급

○ 그 외, 한국 관련 내용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며 전체 분량은 지속적 감소 추세

- 농수산물에 대한 고관세가 주를 이루는 수입정책 문제, 서비스 장벽, 외국인 투자 제한과 관련된 투자장벽, 수출보조금 등은 거의 매년 단골로 지적되는 이슈

- 별도의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장벽 보고서에 제기된 국내 인증기관 및 테스트 절차,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라벨링 조건, 소고기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가 대부분 포함.

· 25~37페이지 수준으로 작성되었던 한국 보고서 부분은 2007년부터 대폭 감소하여 전년 16페이지에서 2011년 14페이지로 감소

※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 주요 개선 내용

- 2010년 12월 3일,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연비,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정에 합의하며 한미 FTA 최종 타결안 도출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 미국산 쌀과 소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성 개선효과로 시장점유율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개선 양상

- 한미 FTA하에서 미 공급자는 GPA상 약정된 것보다 9개 이상 많은 총 50개 이상의 한국 지방정부 입찰에 참여할 권리 보유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 입찰시 양허하한금액은 GPA상 책정된 금액인 203천 달러에서 절반수준인 100천 달러로 감소

  - 한국은 2010년 11월 끝난 반위조 무역협정(ACTA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회원국으로서 위조와 불법복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 참여

- 한미 FTA를 통해 쿼터제도의 증가가 억제될 것이며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는 이러한 쿼터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한미 FTA를 통해 규제과정에서 외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보다 중대한 역할을 제공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데이터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국 내에 설립하도록 되어있는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 기업이 2년내 한국에서의 통신 운영업체 지분을 100% 소유 가능하도록 규제 철폐 예정

- 한미 FTA를 통해 규제 신설시 공시기간이 40일로 연장되고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

- 2010년 7월 한국 보건복지부는 특허약 및 특허종료약을 기등재의약품 재정비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한미 FTA에 의학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한국의 가격책정 및 보전결정이 혁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도록 하고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규제변화에 대해 충분한 공시기간을 갖도록 보장

-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공인된 기준에 근거하여 해외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미국과 관련하여 통신기기 제품분야 상호인증서 상호수용(APECTEL MRA Phase II)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취할 것임

○ 주요 신규 장벽 내용

- 모든 공공기관 VoIP 전화 시스템은 전화기와 작은 디지털 서버인 PBX(Private Branch Exchange)사이에 상호 작용이 없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인증이 요구되지만 미 기업들은 전화기를 PBX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 한국정부는 2010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한국의 규제와 안전기준이 어린 미숙련 운전자가 도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결론내렸으나 미 정부는 이에 대해 대형 오토바이

에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 표시

- 2010년 7월, 한국 식약청은 타이완發 캘리포니아산 체리의 선적관련 농약 MRL 위반으로 인해 미국산 체리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려했으나 체리 수출 타격을 우려한 미국의 반발로 2010년 8월 2달간의 국내생산 및 수입 과일과 채소에 대한 샘플링 테스트로 대체함

- 새로운 제품승인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식과 “우발적 존재”에 대한 한국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려표명

<2010년 對韓 무역장벽 주요 내용>

○ 교역 전반

- 2010년 미국의 對韓 상품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로, 전년대비 5억 88백만불 감소함.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출국으로서, 2010년 對韓 수출액은 388억불로 전년 대비 35.8%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한국의 對美수출액은 489억불로 전년 대비 24.6% 증가함

- 미국의 對韓 민간 서비스 수출(국방 및 정부 조달 제외)은 2009년 기준 126억 달러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對美 수출은 64억 달러로 집계

- 미국 소유 자회사들의 대한 서비스 매출은 2008년 기준 110억 달러이며, 같은 기간 한국 소유 자회사들의 서비스 매출은 57억 달러 기록

- 미국의 對韓 FDI는 2009년 기준 270억 달러로 전년도 224억불에서 증가. 주요투자 분야로는 주로 제조업, 금융/보험, 유통도매업에 집중.

○ 한미 FTA 협상

- 2010년 12월 3일, 한미 양국은 양국간 최대현안이었던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연비,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정에 합의하며 기념비적인 한미 FTA 최종 타결안 도출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7번째 수출시장인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 미국에 중대한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

- 한미 FTA가 발효되면 5년내 교역물품의 95%가 비관세 혜택을 누리

게 되며 나머지 관세도 10년내 사라지게 되어 미국 연간 GDP는 100~120억 달러, 對韓 수출액은 연간 11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농산물 시장 - FTA 발효즉시 미 농산물 수출액의 2/3가량의 관세 및 쿼터가 사라질 예정

· 서비스 시장 - 국제 배송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성이 확대되고 향후 국내 배송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국 금융시장 개방 접근성이 확대되고 미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 보장됨

- 한미 FTA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과 경쟁정책, 노동, 환경, 투명성, 규제절차에 대해 다루게 될 것

[수입 정책]

○ **관세 및 세제**

- WTO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평균 실행 관세율(MFN applied tariff rate)은 12.1%임.(UR 협상시 한국의 관세 상한선은 94.6%)

· 농산물 48.6%, 비농산물 6.1%

- 한국 정부는 고부가 농수산물에 대해 특히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심지어 한국 내 생산이 거의 없는 일부 대상(체키, 증류주, 냉동 옥수수, 냉동 감자튀김, 페페로니, 가공/으깬 감자 등)에 대해서도 고관세 부과.

· 견과류 대부분 30%, 유제품 대부분 35% 이상, 땅콩 230%, 녹차 및 홍차 513~ 754%

- TRQ 적용으로 현재 TRQ 이내(in-quota) 관세는 0에 가까울 만큼 미미하지만, TRQ 초과(over-quota) 관세는 매우 높은 수준

· 꿀 243%, 분유 176%, 보리 324%, 맥주맥 513%, 팝콘 630%
· 쿼터를 결정하는 한국 국내 농업계는 원료를 수입하는 큰 회원사의 경우 매우 우호적인 TRQ 이내(in-quota) 관세 적용

- 한국은 일부 수입 농수산품에 대해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s)를 사용함으로서 실행 관세율 상승시킴.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대부분 미 수출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냉동 민어 포함 농수산물임.

- 한국은 제지, 완구, 철강, 가구, 농업 장비, 건설 장비 및 IT 제품(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정의된 대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

-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는 0%, 5.5% 혹은 6.5% 등 3개로 제품에 따라 차등시켰으나,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양허 관세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일부 일조 섬유 및 원사 30%, 다수의 섬유 및 이불, 베개 등 인공 및 기타 제품 30%, 대부분의 의류 제품 35%

○ **쌀**

- 우루과이 협상에서 한국은 2004년限 MMA(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허용을 대가로, 수입쌀 관세화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음.

- 2005년 4월, MMA 10년 연장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의 쌀 수입량 쿼터는 2005년 225,575톤에서 2014년 408,700톤으로 증가 예정

- 한국은 중국, 태국, 호주산 쌀에 대해 국가별 할당 의무(CSQ; country specific quota)를 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 부터는 2014년까지 연간 최소 50,076톤의 쌀을 수입하는데 동의

- 밥상용 쌀(table rice)도 MMA 할당량에 포함됨으로써 시장접근성 개선됨. 밥상용 쌀의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0년 30%로 증가

- 2010년 한국 MMA 총 수입 할당량 중 미국산 쌀이 93,720톤 83백만 불 규모로 29%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산 쌀 최소 할당량 50,076톤의 187%

○ **소고기**

- 2008년 4월, 한미 양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전면개방에 합의했으나 7월, 한국에서의 대대적인 시위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감이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

- 2010년 미국산 소고기의 대한수출은 113천 미터 톤, 5억 18백만 달러 기록, 미국의 4번째 수출시장이며 이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수치

- 한국 소고기 수입시장의 완전 개방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며 미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

**[정부조달]**

□ 한국은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 지방정부기관(sub-central)이나 정부

소유기업(government enterprises)의 건설 서비스 분야 최소양허하한금액(threshold) 수준은 한국이 미국의 3배에 달하는 2천 3백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음.

□ 한미 FTA하에서 미 공급자는 50개 이상의 한국 지방정부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GPA상 약정된 것보다 9개 이상 많은 기회임. 그리고 지방정부 입찰시 양허하한금액은 GPA상 책정된 금액인 203천 달러에서 절반수준인 100천 달러로 감소

○ 공공기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기구매 암호화 기술

- 2009년 5월 한국정부는 외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10개의 정부기관의 Internet Protocol 기반의 전화시스템에 ARIA라 불리는 암 호화 표준 기술을 포함한 장비를 구매토록 의무화

· 이에 미국은 미 장비업체가 한국 공공기관에 VoIP 장비 판매시 한국에만 적용되는 ARIA 기술을 요구하여 시장 접근이 제한받을 것을 우려

· 그러나 2010년 5월 쌍무간 협상결과 ARIA 기술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규정이 없음을 확인함

- 또한, 2009년 7월 암호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국정원 인증확보 의무화 규정도 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제기.

· 국정원이 인증하는 암호화모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ES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한국 ARIA와 SEED 알고리즘 방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점 제기.

- 모든 공공기관 VoIP 전화 시스템은 전화기와 작은 디지털 서버인 PBX(Private Branch Exchange)사이에 상호 작용이 없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인증이 요구됨

· 미 기업들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기를 PBX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 기업의 시장접근이 제한될 우려 제기. 미국에서 설계된 시스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을 압박해 나갈 것임

[수출보조금]

□ 과거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대표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어 왔던 분야로서, 미국, EU 일본으로부터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받기도 함.

□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은 민간 기관과 같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의 창구로 활용되어 왔음.

- 현 정부의 산업은행 2단계 민영화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은행 및 유사 정부 소유 금융 기관의 대출 관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 밝힘.

[지적재산권 보호]

□ 최근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이행 노력이 개선되고 있으며, 따라서 2009년 스페셜 301조 감시국 리스트(Special 301 Watch list)에서 한국을 제외시킴.

- 2009년 7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파일공유 행위를 막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터넷 계정 정지 처분까지 가능토록 한 “3진 아웃(Three Strikes)" 조항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

- 또한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복제파일을 저장하는 싸이트인 Topsites를 조사하고 운영자 처벌을 약속함.

□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불법복제, 기업 사용자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대학 내 서적 복제, 소비재 복제 등에 대한 우려 지속 제기

□ 한국은 2010년 11월 끝난 반위조 무역협정(ACTA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회원국으로서 위조와 불법 복제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 참여국임

**[서비스 장벽]**

**○ 스크린 및 방송 쿼터**

- 2006년 7월 1일부터 한국 정부는 한국 영화 방영 의무 일수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50% 축소

-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라디오 방송, IP TV에 대해서도 외국 방송물 쿼터제를 운영

· 전체적으로 외국 프로그램은 지상파나 라디오 방송의 20%를 넘을 수 없으며, 분기별로 케이블 혹은 위성 방송 시간의 50% 이내로 제한

· 이러한 쿼터제 내에서 연간 방송 시간 쿼터는 추가적으로 외국 영화 방영시간을 제한하는데,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에서는 총 방영 시간의

75%로 제한됨.

· 외국 애니메이션은 지상파 방송 시간의 55%,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의 65% 이내로 편성해야 하고, 외국 음악은 40% 내에서 편성 가능

· 분기 기준으로, 특정 국가산 컨텐츠는 전체 외국산 영화나 애니메이션, 음악에 배정된 총 쿼터의 60% 이내로 제한

- 한미 FTA는 쿼터제도의 증가를 막을 것이며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는 이러한 쿼터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Voiceover 및 지역 광고 제한

- 한국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의 재송신 채널에 대한 더빙(Voiceover)과 지역광고의 제한을 두고 있음. 이는 미 방송업계의 우려로 작용

○ 법률 서비스

- 2009년 2월 27일자로, 한국 국회에서 "외국법자문사법"(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LCA) 통과됨에 따라, 한국 법률 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됨.

- 기존에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변호사만이 외국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률 자문을 할 수 있었으나, 동법안 통과로 한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로펌, 3년 이상 경력의 외국인 변호자들도 한국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한국정부는 추가적인 개방절차를 통해 외국 법률자문가의 법적 지위

를 설립하고 외국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열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파트너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보험 및 은행**

- 한국 보험시장은 아시아 2위, 세계 7위의 대규모 시장으로서, 한국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 금융사 및 자회사, 지점 등도 한국 시장에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외국회사에 대해 존재하는 제한 조치로 인한 어려움 지적.

- 특히, 우체국, 농협 및 수협은 금융 감독 위원회나 금감원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 보험사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불만.

- 또한, 금융규제시스템의 투명성 부족과 모호한 "행정 지침" 형태의 금융 서비스 규제 감독에 대한 우려도 제기

- 2007년 6월 채택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법 중, 국경간 금융 서비스 거래 내 잠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조항이 2009년 2월 4일부터 효력 발생.

- 한미 FTA를 통해 규제과정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보다 중대한 역할을 제공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데이터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국 내에 설립하도록 되어있는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통신**

-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 위성 서비스 제공업자가 한국 내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아래서 살펴볼 투자 제한 조치와 현지 사무소 주재 요구는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금지 조치는 외국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의 한국 시장 활동을 심각히 제한

- 2008년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규제법 관련 시행령을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는 투명성 및 적법절차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 예정

· 미국 관련업계에서는 라이센싱 관련 요건 일부(실시간 IPTV에 대해 컨텐츠 쿼터 신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으로 간주

**[투자 장벽]**

□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외국인 총 지분, 외국인 개인소유한도, 정부 및 기업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상한선이 상향조정 혹은 철폐되었고, 기업 및 금융 기관이 발행한 단기 금융상품의 외국인 구매가 자유화됨. 하지만, 여전히 투자 관련 규제 결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차별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 통신부문 주요 투자제한 분야

- 시설 기반 통신 운영업체에 대한 외국 지분 상한선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상파 TV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 불허.

- 케이블 TV 관련 시스템 운영업체나 네트워크 운영업체 및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49%로 제한

- 위성 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33%로 제한되며, 외국 위성 재송신

채널은 총 운영 채널수의 20%에 국한

-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 기업이 2년내 한국에서의 통신 운영업체 지분을 100% 소유 가능하도록 규제 철폐 예정

○ 기타 주요 투자제한 분야

- 쌀이나 보리 농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육류 도매업, 전력 생성/유통/판매에 대한 외국인 지분 50%로 제한

- 뉴스 발간매체에 대해서는 30%, 기타 정기간행물 발간 업체에 대해서는 50%로 외국인 투자 제한

□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과 개선효과

- 2009년 7월 31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공기관에 대한 매각 계획 발표

- 한국 정부는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 무관세 수입, 유연한 노동 규제 적용 및 외국인 생활 조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반경쟁적 관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및 규제 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갈수록 역할 비중 증대

- 강력한 수사권과 처벌권 보유 외에 공정거래 위원회는 수사에 비협조

적이거나 위반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중형의 행정 벌금 부과 가능

□ 하지만,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공정거래 위원회 수사시, 검토 및 반대 증거에 대해 응답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지속 제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문회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옴.

- 이에 대해,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응답 기업에 대한 답변 및 증빙자료 제출 권한 부여하고, 운영 절차상 투명성 확대를 위한 노력 등 개선된 부분도 제시

[기타 장벽]

○ 규제 개혁 및 투명성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규제법안 제정이나 규제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며 이것이 미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주요 문제중의 하나임

- 한국의 행정절차법에 명기된 규제 초안 절차상 최소 20일의 공시에 대한 불충분한 기간,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수렴여론에 대한 해명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

- 한미 FTA를 통해 공시기간이 40일로 연장되고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자동차

- 힌국 자동차 시장에는 여전히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내 접근성 확대는 미국 정부의 핵심적 우선 과제임.

· 8% 자동차 관세, 엔진사이즈에 기반한 차별적 세제, 표준, 규제 불투명성, 규제나 표준 제정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툴 미흡.

-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련 양국간 이견을 2010년 12월 3일 최종 합의하여 다수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한국시장에서 미 기업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소음 기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지난 몇 년간 많이 해소되어 옴.

- 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통행금지, 높은 관세 및 세금, 등록증 부재, 오토바이를 담보로 오토바이 구매 파이낸싱 불가 등의 시장 접근성 제한 문제가 남아 있음.

- 한국정부는 2010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한국의 규제와 안전기준이 어린 미숙련 운전자가 도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결론

- 미 정부는 이에 대해 대형 오토바이에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고속도로 통행금지 철폐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 지속할 의지 밝힘.

○ 의약품

- 2006년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비용 통제 조치로 수입 혁신 약제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추세. 또한, 동법 시행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채택 이후 시장에 출시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전(reimbursement) 승인된 약제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음.

-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혁신적인 신약 개발, 투자 및 출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대한 우려 제기.

- 2010년 7월 한국 보건복지부는 특허약 및 특허종료약을 기등재의약품 재정비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혁신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 제약산업의 R&D를 더욱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임.

○ 의료 기기

- 한국 의료기기 시장의 가격 책정 및 보전 결정 절차 등과 관련한 투명성이 결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우려.

- 현재 신규 의료 기기에 대한 보전 비율 상한선을 출시된 유사 제품의 90%로 두고 있는 한국의 보전기준 정책을 대체하기 위해, 201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가격 일원화(single price)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평가 시스템을 채택
- 그러나 새로운 제도 채택이후 보건복지부는 단일 제품에 프리미엄 가격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프리미엄 가격의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함

- 미 기업들은 최종 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제조원가와 수입가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가격 재평가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혁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도록 보건복지부에 촉구

- 한미 FTA에는 의학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한국의 가격책정 및 보전 결정이 혁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도록 하고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규제변화에 대해 충분한 공시기간을 갖도록 보장하는 조항 포함

○ **증류주**

- 2008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한국 주세법에 따라, 특정 형태의 증류주 및 희석주를 포함한 일부 “전통주(traditional liquors)"에 대한 세금이 50% 감축됨. 이에 대해, 미국 관련 업계에서는 경쟁 관계의 수입 술이 ”전통주“ 카테고리에 맞지 않아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됨을 우려.

- 한국 정부는 “전통주”로 지정된 술은 전체 한국 주류 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로 생산되는 상황으로서, 주세감축 대상 카테고리 확장 계획이 없음을 밝힘. 미국 정부는 동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2010년 對韓 위생검역장벽 주요 내용>

[식품안전성]

○ 소고기

-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한미 양국 합의 이루고, 2008년 7월 한국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맞아 한국 소고기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간 상업적 양해(commercial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

- 수출 재개 이후, 對韓 소고기 수출량은 2010년 113,000톤, 5억 1,800만불 기록하여 전년대비 140% 증가하며, 한국은 미국 4대 쇠고기 시장으로 부상.

- 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의 완전 개방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공동 협의 추진 계획

○ 최대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

- 2009년 7월, 한국은 WTO에 한국내 사용에 대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농약에 대한 MRL을 제거할 것이라 통보했으며 이 제거 대상에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된 MRL도 포함됨

- 미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에서 승인되었지만 한국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수입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또는 한국이 적절한 위험평가 제도를 완성할 때까지 현재 한국의 수입 MRL 리스트를 유지할 것을 촉구

- 2010년 7월, 한국 식약청은 타이완發 캘리포니아산 체리의 선적관련 농약 MRL 위반으로 인해 미국산 체리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려 했으나 체리 수출 타격을 우려한 미국의 반발로 2010년 8월 2달간의 국내생산 및 수입 과일과 채소에 대한 샘플링 테스트로 대체함

[식물검역]

○ 체리

- 한국 정부의 수입산 체리에 대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절차 요구에 대한 우려 제기

- 훈증절차만 피할 수 있어도, 항공 수송이 아닌 해상 수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품 저장수명도 늘리고 가격절감도 가능하여 수출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2008년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대체 방안 마련 노력 중.

[바이오테크놀로지]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규제 시스템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에 있어 우려를 자아냄

- 특히, 2008년 시행된 농산물 바이오테크 제품의 거래를 규제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법에 대한 우려 표명. 일부 수입품에 대한 규정은 관련국제협약인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는 점 문제 제기

- 또한 새로운 제품승인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식과 “우발적 존재”에 대한 한국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려함

- 한국과 미국은 위험평가 과정에서 기술 개발자들과 한국 규제기관과 정기적인 소통절차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며 미 정부는 주요 우려사항에 대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

<2010년 對韓 기술장벽 주요 내용>

○ 쌍무 협상

- 한국과 미국은 기술 장벽을 비롯한 양국간 잠재적 무역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쌍무 협상을 개최함

- 모든 관련된 미 단체가 참여하고 USTR이 주도하는 쌍무협상을 통해 양국간 이견을 토의,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고위층 협상으로 발전시켜 나감. 2010년에는 5월과 9월에 개최됨

○ 적합성 평가

-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공인된 기준에 근거하여 해외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미국과 관련하여 통신기기 제품분야 상호인증서 상호수용(APECTEL MRA Phase II)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취할 것임

- 한국 관련법에 따르면, 안전 테스트 및 인증은 적합한 테스트 기기와 자격 있는 테스트 인력을 갖춘 국내 소재 비영리 지정 기관을 통해서만 행해지도록 규정. 따라서, 미국 제조업체의 경우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테스트 및 인증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 및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임.

- 하지만, 양국간 협의를 통해 2009년과 2010년 몇 가지 진전 사항 있었음.

· 2009년 한국 내수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적합평가 기관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내 4개 연구소만이 아

니라, ILAC MRA에 가입된 기관에서의 테스트 결과도 인정하게 됨.

· 2010년 5월, 냉장고 에너지효율성 인증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기존 한국의 비영리 지정연구기관 뿐만이 아니라, 국제공인시험기관 협약인 ILAC MRA에 가입한 기관에서도 테스트 진행이 가능해짐.

○ 자동차

- 2009년 7월부터 한국 정부는 새로운 자동차 연비기준 및 배기가스 방출량 제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은 한국의 연비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심에 동감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산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해옴

- 2010년 12월 한국은 2009년 기준 4,500대 미만 판매량을 기록한 제조사는 2012년~2015년까지 4년에 걸쳐 한국 기준(평균연비 17km/ℓ 혹은 평균 배기가스 방출량 140g/km 기준)보다 19% 낮은 수준 허용하는 것에 동의함

○ 유기농 제품 - 요건 및 적합성 평가

-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 관련, 미국 관련업체는 동등성 인정에 대한 한국의 관련 법규정 부재, 유기농 제품 내 유전자 변형성분 불허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우려 제기해 옴.

- 이로 인해, 미국 및 관련 수출국들의 요청으로 수입산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시행 발효일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됨.

- 장기적으로 양국간 협의를 통해 유기농식품 해외 인증기관 허용 및 동등성 인정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 **가공식품 - 유전자조작 라벨 부착 의무**

- 2008년 10월, 한국 식약청이 제안한 유전자조작 라벨 부착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

· 식약청에서는 라벨 부착 대상을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식품 뿐만이 아니라, 이 성분을 사용한 식용류, 증류수와 같이 가공된 식품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

- 한국 정부의 동 법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정이나, 이러한 라벨링 의무화 대상 확대 움직임은 식품 교역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태양광 패널 - 디자인 기준**

- 2008년 7월 이후, 태양광 패널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한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 가능함. 하지만, 2007년 지정된 박막형 태양광 패널 의무기준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인증이 가능한 타입은 비정형 실리콘계 박막 태양광 패널 한 가지 뿐임.

- 이에 따라, CdTe(카드뮴 테룰라이드)나 CIS(Copper indium Selenide) 타입과 같은 다른 주요 박막형 태양광 패널은 현행 한국 기준으로는 테스트와 인증이 불가한 상황.

- 미국 정부는 한국도 박막형 태양광 패널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IEC 61646 방식을 도입하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

## III. 평가 및 시사점

□ 경기회복의 해법을 수출에서 찾고자하는 오바마 행정부, 미 수출에 방해가 되는 무역장벽 해소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그 주요타겟은 중국과 EU가 될 전망

-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회복 해법을 국내 소비, 주택, 해외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지출 감소 속에서 실제 미 수출은 2009년 경기침체 시작된 이래 미 경제성장의 절반이상 기여함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에서 매년 3월초 발표하는 대통령의 Trade Policy Agenda와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목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며 올해 최대목표는 무엇보다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임

- 금년도 보고서는 총 582쪽 분량으로서,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등 순으로 기술하고 있어 중국과 EU에 통상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14쪽 분량으로서 전년 16쪽보다 축소되어 무역장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0년 말 FTA 협상을 시작한지 4년 6개월만에 한국과 미국, 한미 FTA 최종안에 합의함으로써 올해안에 발효된다면 양국간 무역장벽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정부조달 참여기회 확대, 스크린 및 방송쿼터 증가 방지, 금융시장 개방, 투자기회 확대 등 한미 FTA 발효시 기존 무역장벽 상당부분 해소

- 예산법안 둘러싼 민주, 공화당간 극심한 여야대치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한번에 추진하기 원하는 공화당,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요구 등으로 인해 현재 한미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미 무역대표부 Kirk 대표는 7월 1일까지 한미 FTA 비준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으며 前 한미 FTA 협상대표였던 Wendy Cutler, 미국의 중요 수출시장인 한국을 경쟁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미 FTA를 2011년 미 통상분야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라 밝히는 등 한미 FTA 비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강함

## 첨 부 : 2011년 對韓 무역장벽 보고서 요약

# 2011년도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 분 야 | 주요 내용 |
|---|---|
| 수입 정책 | ○ 일부 고가의 농수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br>○ 관세할당(TRQ) 및 조정관세를 통해 수입 농산물 시장접근을 제한<br>○ 2008년도 합의 및 30개월령 미만 수입허용 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수출 증가<br>○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의 한국시장 접근 개선 |
| 정부조달 |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국산 암호화 알고리즘(ARIA) 탑재와 관련, 2010.5월 양자협의 이후 10개 국가안보관련 기관 이외에 ARIA 탑재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 없음.<br>○ 공공부문 암호화 네트워크 장비에 일부 암호화 알고리즘(ARIA 또는 SEED)만을 인증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인 AES는 배제<b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공공부문 인터넷 전화기가 교환기와 상호호환할 경우만 인증 |
| 산업보조금 | ○ 산업은행 민영화 현황 설명<br>-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고 산업은행과 한국신용 공사를 분리하였으며, 향후 상장 계획 등에 대해 소개 |
| 지재권 | ○ 일반적으로 지재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나, 일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침해행위, 기업용 소프트웨어 침해행위,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소비자 상품의 복제 등에 대해 우려<br>○ 한국은 ACTA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10.11월 타결된 ACTA 협상은 지재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서비스장벽 | ○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지적 |
| 투자장벽 |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 장벽 제거 등(과세 등 투자관련 규제 결정의 투명성 부족 일부 제기)<br>○ 쌀·보리 경작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도매, 전력사업,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등 우려<br>○ 경제자유구역 운용, 기타 국영기업 매각 계획 등 소개 |

| 분 야 | | 주요 내용 |
|---|---|---|
| 경쟁 | | ○ 2009년 한국 공정위는 조사 당사자의 청문회 재개 요청 허용, 조사당국의 처벌 관련 권고사항을 대부분 조사 당사자에게 제공, 조사 결과와 이유를 즉각 조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투명성 제고 |
| 기타 장벽 | 자동차 | ○ 높은 자동차 수입관세(8%), 배기량 기준 조세 및 기타 표준 관련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12.3 합의는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임.<br>○ 모터사이클 관련, 소음규제에 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제한, 고관세 및 기타세제, 저당권 설정 불능 문제가 있음. |
| | 의약품 | ○ 약제비적정화방안(DERP) 관련, 혁신약의 개발을 저해하는 환급정책 시행에 대해 자제 요청<br>○ 2010년 특허약 및 특허종료약이 기등재의약품 재정비 사업에서 제외된 바, 이는 한국정부가 혁신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 제약산업의 R&D를 더욱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임. |
| | 의료기기 | ○ 미 업계는 의료기기/치료재료의가격 책정 및 환급정책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속 제기중임. |
| | 주류 | ○ 전통주에 대한 50% 주세 감면에 대해 미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 |

# 2011년도 SPS/TBT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 분 야 | 주요 내용 |
|---|---|
| SPS | ○ 쇠고기 관련, 위생조건합의 이후 수출의 증가세를 언급하고, 미 정부로서는 미국의 위험통제국지위, 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임.<br>○ '불검출 농약 목록 신설' 관련 기존 잔류최대허용치(MRL) 목록 유지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우리 정부와의 협의 의지 표명<br>○ 체리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요건 관련 식물검역 당국간 협의 현황 설명<br>○ LMO법이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한다고, 우려 표명하고, 위해성 평가중에 기술개발자와 한국 규제당국간 정례적 소통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음. |
| TBT | ○ 적합성평가 관련, 한미 FTA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공표된 기준에 의한 평가기관 인정 등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기술.<br>○ 2009년 외국 기관의 리튬이온배터리 안전 인증 허용 및 2010년 냉장고 에너지 효율 시험 허용은 긍정적 진전<br>○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관련, 2010.12월 2009년 양국간 합의 사항 기술<br>○ 유기가공식품 인증 관련, 유예기간연장 및 동등성 인정을 위한 법령개정 등<br>○ 한국 정부가 여러 유형의 박막 태양전지 중 비정형 실리콘계에 대해서만 인증을 실시중인 것에 우려를 표명 |

자료원: 외통부, 2010년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작성자

◈ 워싱턴 권오승

◈ 구미팀 이정선

Global Business Report 11-005

#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 행 인 ▌ 홍석우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1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